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1>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1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중심으로 -



✎ 장민영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 myjang@klri.re.kr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들의 경우 첨단 디지털 기술이 보다 고도화되고 보편·심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하게 될 구성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아동의 건전한 접근과 활용은 미래 세대의 기초적인 역량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국내법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들의 활동 영역을 보다 확장시키고 아동의 권리들이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는 못하다. 우리의 경우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게임, 동영상 및 소셜네트워크 등의 과몰입에 대한 어른들의 우려로 인하여 또는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 즉 온라인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성매매, 혐오표현, 사이버 왕따 등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아동의 접근 및 활용을 차단하는 법제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반면, 최근 아동인권관련 주요 국제기구는 인권의 보편성(universalism) 측면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의 보장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아동인권 보장에 관한 국내 법제 및 보호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관련 국제인권 규범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II. 국내 법제 및 보호 현황

1. 국내 법제 현황

디지털 환경 그리고 아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국내 법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한 법제를 분석하여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중에서 접근권, 차별금지, 사생활 보호권, 교육권 및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권 다섯 가지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제들이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들도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접근권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었으며 차별금지 또한 접근과 관련한 취약계층 지원에만 국한되었다. 게다가 사생활 보호권은 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있어서 아동 또는 보호자의 동의권 그리고 정보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불과하였다. 교육권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보교육,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건전한 인터넷 활용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데 그쳤다.

디지털 환경은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은 이미 디지털 시대에서 중요 구성원으로서 입지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글로벌 인권규범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가 전방위적으로 보장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아동권리에 대한 국내법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국내법제가 규율하고 있는 권리들 중에서, 접근권의 경우 아동친화적 접근에 대한 사항, 차별금지의 경우 자동의사결정시스템 등으로 인한 아동의 배제, 장애아동 등 여타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항, 사생활 보호의 경우 전자감시, 사생활 정보의 동의 없는 공개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권의 경우 디지털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다양하고 아동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들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법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의견청문권,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건강권 그리고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2. 국내 보호 현황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 교사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50개 학교 학생 및 교사 그리고 50여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설문조사 항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설문항목에 대하여 현직 교사 등의 자문을 받았으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설문항목 작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견들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 | 아동 설문조사 | 교사 설문조사 | 전문가 설문조사 |
|------|--------------------------------------------------------------------------------|---------|-----------------------|
| 조사대상 | 초·중·고등학생 | 교사 | 아동인권 및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
| 조사지역 | 전국 | | |
| 표본 수 | 1,247명 | 50명 | 52명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5% | | |
| 조사방법 | 서면 | 서면 | 서면(전문가 일부에 대한 FGI 포함) |
| 표본추출 | 국가통계포털의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자료를 표본틀로 구성하여, 지역별로 제공근 비례 할당을 통해 표본을 추출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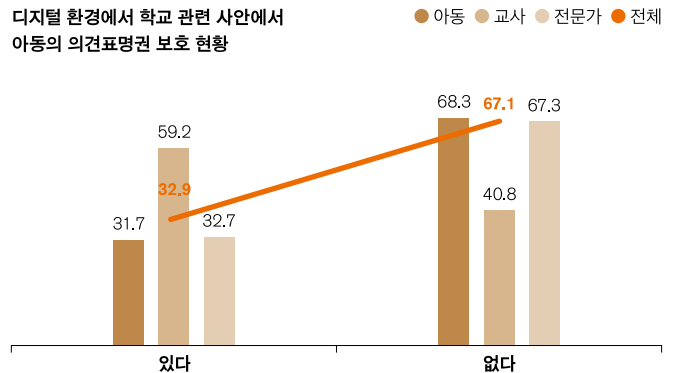
설문은 아동 최선의 이익 및 차별 금지 등을 포함한 기본원칙, 접근권, 표현의 자유, 참여권, 프라이버시 및 정보 보호, 교육권, 보호권 그리고 피해구제까지 글로벌 인권규범들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아동인권 유형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다. 지면의 한계상 해당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를 모두 소개할 수는 없고 다만, 국내법제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의견표명권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아동이 학교 교육활동이나 재량휴업일 결정, 수학여행(수련회) 찬반, 학교 교칙 변경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디지털로 참여한 적이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409명(32.9%)이 참여했거나 참여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집단에 따라서는 아동 31.7%(N=363), 교사 59.2%(N=29), 전문가 32.7%(N=17)가 의견표현에 참여했거나 참여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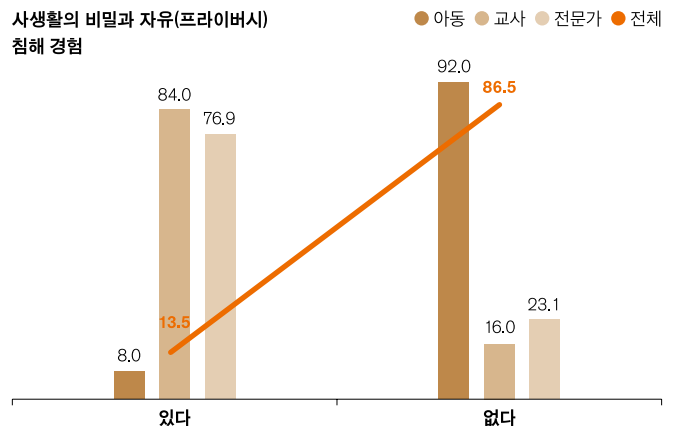
한편, 최근 14년간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180명(13.5%)이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1,154명(86.5%)이 '없다'고 하였다. 이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98명(8.0%), 교사 42명(84.0%), 전문가는 40명(76.9%)이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해당 설문조사에서 아동과 교사 및 전문가의 의견이 상반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온라인 감시 등 인권 침해 현실을 아동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향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술 및 정책 지원 방안 마련 이전에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인식에 대한 교육 지원도 함께 요청된다 할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학교 관련 사안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호 현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 침해 경험



III. 글로벌 규범 현황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인권’을 전문적(專門的)으로 규율하는 인권규범이다. 동 협약은 각종 아동의 자유 및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아동권리협약은 각종 아동인권을 규정하면서 여타의 인권규범들이나 국내 법률들이 그러하듯이 그 적용 영역이 오프라인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온라인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아동에게 있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동은 날로 확대되고 중요해짐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인권규범들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자유 및 권리들이 온라인에서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 논의들이 축적된 결과, 아동권리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해석 그리고 회원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20년 8월 13일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라는 제목으로 제25번 일반논평(안)¹⁾을 작성 및 발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안)은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확대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아동의 현재 생활 그리고 미래 생활에 중요한 수단이 되어 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여전히 존중되고 보호받고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이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기의 경우에도 아동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환경으로 인한 혜택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역기능 양자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의견표명권, 차별금지, 접근권,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건강권, 교육권,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아동인권 유형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보장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들을 제시하였다.

IV. 마치며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는 더욱 짙듯이 첨단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폐해 역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국내 아동인권은 참여권에 대한 적극적 수용 보다는 보호권 보장에 치중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는데,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기존의 법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수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인권규범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고 오는 변화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는데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향유하여야 하는 인권들의 보장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정보를 보호하거나 유해한 온라인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도 표현의 자유, 의견표명권, 사생활의 자유권 등 각종 아동 권리들이 보장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법제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인권 보장은 미흡한 수준이다. 아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권을 경험하고 체득하여야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권리향유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의견표명권 및 교육권 등 관련 법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구체적인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Draft General Comment No. 25: Children’s Rights in relation to the Digital Environment, CRC/C/GC (Aug. 13, 2020).